

HL홀딩스 협력사 행동규범

제 1 장 총칙

제1조 개요

HL홀딩스와 거래하는 전 협력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관리를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다. HL홀딩스 협력사 행동규범은 HL홀딩스의 협력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HL홀딩스의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HL 홀딩스는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협력회사를 방문, 정기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er.7.0 을 참조하여 작성됨

제2조 적용대상

본 행동강령은 HL홀딩스와 모든 종류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 대상이다.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행동강령을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협력사 포함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본칙

제1절 인권 및 노동

협력회사는 모든 고용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임시직, 이주노동자, 학생, 계약직, 정규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협력회사는 강제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이직, 퇴직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한 채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아동근로 금지

협력회사는 15세 미만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장 실습생 제도 운영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8 세 미만의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 관점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승진, 보상, 훈련 기회제공 등 고용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국적, 결혼여부 등을 근거로 괴롭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신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근무시간

협력회사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비상,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서 정하는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급여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단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단체 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한다. 또한, 근로자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보건안전

협력회사는 보건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보건 및 안전허가서

협력회사는 필요한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운영 및 신고/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 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11조 작업환경 유해인자 관리

협력회사는 적절한 설계, 공학적 제어, 행정적 제어, 설비 안전검사, 작업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안전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수단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산업재해

협력회사는 근로자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3절 환경

협력회사는 제조 활동 시 재생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환경 허가 및 신고

협력회사는 모든 필수 환경 허가, 승인, 등록을 획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운영 및 신고/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유해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물질들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사용, 재활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자원 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보존, 재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 개선노력을 통해 폐수와 폐에너지 포함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 및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폐수,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협력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하고 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절 윤리

협력회사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정직성, 성실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7조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회사는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적절한 금전 또는 선물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부패, 부당이득,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18조 지적재산권

협력회사는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제19조 부당 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획득 및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 3 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한다.

제20조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회사는 내부 고발자 기밀유지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

보보호 협력회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책임광물 관리

공급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발트, 탈탄륨, 주석, 텅스텐, 금 등의 책임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행동규범은 2023년 06월 01일부로 시행한다 .